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. 31 선고 2018나33694(본소), 2018나33700(반소) 판결 [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· 건축에관한 소송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. 31 선고 2018나33694(본소), 2018나33700(반소)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5. 8 선고 2017가단5175946 판결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항소인 겸 피항소인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인 담당변호사 박충성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종복

피고(반소원고), 피항소인 겸 항소인B 주식회사

피고, 피항소인C 주식회사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엘 담당변호사 정경일

변론 종결 2019. 11. 22.

판결 선고 2020. 1. 31.

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5. 8. 선고 2017가단5175946(본소),

2018가단5051900(반소) 판결

주 문

1.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(반소원고) B

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

원고는 피고(반소원고) B 주식회사에 8,25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3. 23.부터 2020. 1.

31.까지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원고(반소피고)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(반소원고) B 주식회사의 반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3. 본소에 대한 항소비용과 반소에 대한 소송 총비용은 원고(반소피고)가 부담한다.

4.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본소 :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고 한다)에게, 피고(반소원고) B 주식회사(이하 '피고 B'이라 한다)는 8,250,000원, 피고 C 주식회사(이하 '피고 C'이라 한다)는 38,777,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반소 : 원고는 피고 B에게 8,25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원고 :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 원고에게, 피고 B은 8,250,000원, 피고 C은 38,777,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피고 B: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 원고는 피고 B에게 8,25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8, 10 내지 14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,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

○ 제1심판결 3쪽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.

『0 대가의 산출 및 지급방법

① 설계업무에 대한 대가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에 따라 원고와 피고 B이 협의하여 정한다.

② 설계업무의 대가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.

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, 원고와 피고 B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지불시기	조정비율(%), 부가세 포함
계약체결 시	50
실시설계 전	50
계	100

』

○ 제1심판결 3쪽 11행 말미에 '지하실 및 주차장 제외'를, 15행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한다.

『계약서 작성 이후 공사 계약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건축설계 및 인·허가과정 중 발생하는 공사이전

단계의 단순 변심, 변경 계약 이전 추가공사비 증가로 인한 원고의 계약 포기, 토지의 소유권 변화 등 원고에 의한 사유가 발생되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계약금은 환급하지 아니하고 피고 C에 귀속된다(제20조 제1항 제4호).』

○ 제1심판결 5쪽 14행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.

『원고는 그 다음날 위 수정된 실시설계도면에 대한 검토안을 1주일 후인 다음 주말까지 보내겠다고 회신하였다.』

○ 제1심판결 6쪽 2행의 '공사대금' 앞에 '주차장 면적 등의 단가를 낮추어'를, 6행의 '인테리어 스펙확인서' 앞에 '최종 계약금액에 반영될'을 각 추가한다.

○ 제1심판결 6쪽 7행의 '원고는'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.

『2017. 7. 24. F에게 '현재 단계에서 계약을 파기할 경우 예상되는 페널티(위약금) 및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용역 범위' 등을 문의하였고,』

○ 제1심판결 6쪽 11행의 [인정근거]에 '갑9호증, 을가19 내지 27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'를 추가한다.

○ 제1심판결 7쪽 14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.

『가. 피고 B의 주장

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 세부조항 제4조 제3항에 따라 '실시설계전 대금의 50%'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, 피고 B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므로, 원고는 피고 B에 대금의 50%인 8,250,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또한 피고 B이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원고가 피고 B의 건축설계도면을 수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를 주장하기 때문이다.

나. 판단

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 세부조항 제4조 제3항에 따라 설계대금 16,500,000원의 변제기를 계약체결시와 실시설계전으로 정하여 50%씩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, 피고 B은 2017. 7. 12. 원고에게 실시설계도면을 제공하였으므로, 원고는 피고 B에 위 분할지급 약정에 따른 잔대금 50%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한편 갑2호증, 을가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원고와 피고 B이 각각 소지한 이 사건 설계계약서의 본문 여백에는 수기로 '50%=8,250,000 인허가시 50%'라는 메모가 동일하게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, 위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 B이 위 메모에 따라 잔대금 50%의 변제기를 실시설계에 후속한 '인허가시'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,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2017. 7월 하순경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 B으로부터 제공받은 실시설계도면을 수용하지 아니하면서 이 사건 설계계약을 파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2년 이상의 시일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한 바,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행의 제공이 있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고, 이로써 피고 B의 인허가 채무는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,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그 잔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.

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잔대금 8,250,000원(=16,500,000원×50%)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8. 3. 23.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시판결 선고일인 2020. 1. 31.까지 상법이 정한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,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(2019. 5. 21.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. 6. 1. 시행된 것)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』

3. 결론

그렇다면 피고 B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 B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 B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,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 B의 반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신현석

판사이희준

판사정원석